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 촉구 건의안

(이숙자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621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3월 31일
발 의 자: 이숙자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곽향기, 김규남,
김영철, 김용호, 김원태,
김지향, 김태수, 남창진,
이성배, 이종환, 이희원,
최민규 의원(13명)

1. 주문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사립 초·중·고·특수학교를 포함한 모든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사립학교법」 및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조례에서 사립학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 등에 따라 일부 사립 중·고등학교는 여전히 재정지원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적 지원 정책은 재정이 열악한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음 .
- 학생 수 감소 및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모든 사립학교에 대해 재정지원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을 조속히 개선하고, 보다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립학교법」,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4. 이송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 촉구 건의안

2023년 10월 11일 제안된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3년 12월 22일 가결됨에 따라,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여전히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 등을 근거로 일부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고 있어, 조례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수업료 자율화 학교에 대한 지원이 배제되고 있으며, 일부 사립 초등학교도 여전히 재정지원에서 제외된 상태이다.

교육현장의 차별적 재정지원 정책은 부족한 재정 상태에 놓인 사립학교의 교육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개정 조례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사립학교 재정지원 정책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개정된 조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사립학교 재정 지원을 실질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사립 초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사립학교가 재

정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내부 지침을 이유로 일부 학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개정된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학교 종류 및 운영 형태와 관계없이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나, 시설사업비 지원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재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에 따르면, 사립 초등학교, 국제중학교,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등은 원칙적으로 시설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공·사립학교를 막론하고 중요한 교육정책의 일부이며, 국가 시책 및 안전관리 사업의 경우에는 일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시설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기준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교육의 질과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의 운영 방식을 보다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사립 초등학교를 포함한 일부 사립학교에 대해 목적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과 같은 운영비 지원에서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지원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기존의 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시설안전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개정된 조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사립학교 재정지원 정책을 공정하고 일관되게 운영한다면, 모든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시설 개선 및 안전 조치와 같은 필수적인 교육 지원이 특정 학교 유형에 따라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을 개선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 생활시설과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 적극적인 재정책임을 져야 한다. 학교 화장실, 급식실 등 기본 생활시설은 학생들의 건강과 위생에 직결되며, 잔디 운동장 조성 및 개보수는 신체활동과 정서 함양에 중요한 요소다. 이처럼 학교 시설은 단순한 공간을 넘어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기본 인프라이며, 공립학교 뿐 아니라 사립학교 학생들에게도 동등한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러한 필수 생활 기반시설과 체육시설에 대해 공공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사립학교를 포함한 학교 현장 전반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조례 개정 취지에 맞춰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사립학교 재정지원 정책을 조속히 정비하여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 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